1998. 9.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 9. 11	'98. 9. 12	'98. 9. 16	'98. 9. 16	시정과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동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	〃	'98. 9. 15	〃	가정복지과장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사회진흥과장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여성회관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구현을 위하여 우리시가 마련한 충주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의 협의가 완료되고

○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기구 정원관련조례 모델안을 기본으로 본청, 직속, 사업소, 읍·면·동을 통합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의 기능적 범주중 기획정책 기능과 총무, 시민복지, 환경, 지역경제 기능중 1차 산업분야 상공기능과 도시건설 기능별로 통합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좌, 보조기구간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국·과 단위를 재구조화 하였음.

○ 보좌기구기능

- 국단위 조정 △ 1국
- 과단위 조정 △ 5과(통합3, 폐지2)
- 직속기관 조정 △ 2과(지도소1, 보건소1)
- 사업소 △ 1
- 읍·면·동 △ 3(과소동 통폐합)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구현을 위하여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현 원	1,365	551	172	142	484	16
조 정	1,205	474	160	159	398	14
증·감	△ 160	△ 77	△ 12	17	△ 86	△ 2

다.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 및 정부의 저효율, 고비용 구조탈피와 능률적인 행정의 생산성 창출을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방침에 따라

○ 단계적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통 합 방 법	명 칭	동사무소위치
성내·성남·성서동 + 충인·충의동	성내·충인동	현 충인동사무소
교현1동 + 종민·안림·목벌동	교현·안림동	현 교현1동사무소
단월·풍·가주동 + 용관·용두· 달천동	달천동	현 단월동사무소

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 시정에 대한 자문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함.

2) 주요골자

○ 기 능 :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

○ 구 성 : 각계층 남, 여 인사로 20인 이내 위원장은 시장

○ 회의운영 : 정기회 년1회, 임시회는 필요시

○ 수당지급 :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지급

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로서 시설사용자에게 불리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 취소 요구시 사용료전액을 반환하고 7일이내 취소 요구시는 50%공제후 잔액을 반환함.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택임대 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인한 소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 소비용 소도축의 경우 도축세를 면제

2) 주요골자

○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전용면적 60㎡이하 → 85㎡이하로 확대

○ 제2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함.

사.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불용품소요조회기준액을 결정함으로서 불용물품의 처분에 신속을 기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져 함.

2) 주요골자

○ 10백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소요기준액을 정하여 불용품을 처분토록 함.

○ 제17조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액 개정

- 10백만원미만 → 10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아.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용료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으로 시설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설사용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특별사용료징수, 시설사용료 허가시 사용료 선납사항 등을 지정함.

○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고 사진, 비디오 촬영업주가 예식장 사용시는 허가 받은후 사용

○ 유료입장권 발행의 경우 총 수입 금액의 20/100을 특별사용료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등의 반환규정을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계장의 계업무 총괄 분장 방식을 지양하고 계장을 팀장으로하여 고유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과장이 실무업무를 총괄 융통성 있게 직원을 운용할수 있음.

○ 보건소 과폐지후 직원들의 5급 승진기회가 없고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외 중복 기능은 본청 해당과로 흡수조정

○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면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정한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을 개정하는 것임.

○ 부칙 제2조에 초과현원의 경우 일반직은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베풀어 직원 면직으로 인한 심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지방행정조직개편의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통및반설치조례와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개발기본법에 의거 제정하는 것임.

○ 구성은 20명이내로 당연직은 시장과 사회경제국장이며 18명은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

○ 관계기관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문화회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와 같이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규제 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중 일부조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각 시·군에 일괄 개정토록 하는 것이며

○ 주택임대 사업자 및 자가소비용 소 도축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임.

사.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2년마다 또는 필요시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관리 처분하여야 함.

○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를 충청북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그 개선 대책으로 시·군 물품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아.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주가 예식장 출입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신설 총 수입금 20/100을 사용료로 징수하여 시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확정과제중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질 의]

○시·군통합('95. 1. 1.)후 현재까지 보건소에 의무과는 있으나 과장이 없음. 과장이 없어도 운영된다면 의무과를 폐지하고 보건사업과를 존치하는 방안은?

☞ 답 변

○당초 시·군 통합시 잉여인력 처리를 위해 신설된 것이며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보건소장이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무리가 없다고 보아 폐지한 것이며, 의무과장은 보건소에 전문의등 의사가 환자진료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여 존치한 것임.

[질 의]

○시민생활지원국의 시민생활지원과는 거의 종전 사회과 업무를 이관한 것이므로 시민사회과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은?

☞ 답 변

○시민생활 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시민생활을 총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민생활과로 조정하였음. 그리고 현재까지 총괄기능 부서가 없었음.

[질 의]

○각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총괄인허가 부서 신설 방안은?

☞ 답 변

○각종 인허가를 1개소에서 전담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예) 건설, 도로, 수자원, 농정등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질 의]

○일용직 · 청원경찰 · 사회복지요원등 조정 방안은?

☞ 답 변

○정수 473명중 현재까지 53명을 조정 하였으며 현재 420명임.

'98년도에 47명이 감원될 대상임.

[질 의]

○감원대상 160명중 명퇴 · 공로연수자 68명외는 언제까지 감원되는 것인가?

☞ 답 변

○2000년말까지 (91명)존치됨.

[질 의]

○보직이 없으면 담당업무는?

☞ 답 변

○무보직자는 대기발령하여 현안사업팀 구성등 격무부서에 배치될 것임.

[질 의]

○대기 발령과 재보직 여부는?

☞ 답 변

○자연감소 및 능력평가등 재보직 가능함.

다.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질 의]

○단월동이 달천동으로 명칭변경시 공부 변경여부?

☞ 답 변

○동사무소만 달천동으로 칭하고 공부상 변경 없음.

[질 의]

○행정동명 달천동을 단월 · 달천동으로 할수 없나?

☞ 답 변

○각 동의 주민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

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질 의]

○제3조(구성)중 "위원 위촉은 시장이 한다" 라는 조문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각 여성단체(통 반장등) 대표를 선임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답 변

○여성단체 대표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 하겠음.

[질 의]

○시장, 국장, 과장등 공무원 위촉을 재검토 바람.

☞ 답 변

○참고 하겠음.

[질 의]

ㅇ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국장이 당연직인가?

☞ 답 변

ㅇ당연직에 관한 근거법 없음.

[질 의]

ㅇ수당, 여비 지급액은?

☞ 답 변

ㅇ1회 출석시 5만원(수당)만 지급함.

[질 의]

ㅇ위원회는 필요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은데 년간 운영 계획은?

☞ 답 변

ㅇ정해진바 없고 사안발생시 운영함.

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 의]

ㅇ제2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조문 용어중 사용일전 7일전과 사용일전 7일 이내라 함은 그 시점을 답변바람.

☞ 답 변

ㅇ사용일전 7일전은 사용하는 날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일 전일부터 8일째 되는 날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일전 7일이내는 사용하는날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일 전일부터 7일째 되는날까지를 말하는 것임.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질 의 }

○도축세 미납자 벌칙 규정은?

☞ 답 변

○지방세법에 의거 도축세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질 의 }

○도축 신고는?

☞ 답 변

○수의사에게 신고하고 도축함.

사.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 음'

아.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질 의 }

○제13조 사용료 반환중 예식실만 15일전으로 규정한 이유는?

☞ 답 변

○사용자 보호를 위해 더이상 규정하기 곤란함.

{ 질 의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일은?

☞ 답 변

○ 7일임.

5. 심사결과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 수정의결(수정안:별지1)

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의결(수정안:별지2)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사.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아.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다.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 수정안

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 지 1]

■ 조 례 명 :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공무원'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구성) ① (생 략)	제3조 (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③(생 략)	③(원안과 같음)
④당연직 위원은 사회경제국장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공무원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생 략)	2. (원안과 같음)

[별 지 2]

■ 조 례 명 :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2호중 "사용일전 7일전"을 "사용일 7일전"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 "사용일전 7일이내"를 "사용일 7일이내"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 (사용료반환) (생 략)	제20조 (사용료반환) (원안과 같음)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사용자가 <u>사용일전 7일전</u> 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 - - - <u>사용일 7일전</u> -.
3. 사용자가 <u>사용일전 7일이내</u> 에 취소요구시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3. - - - - <u>사용일 7일이내</u> -.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내지 제107조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 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실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농정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 ①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②기획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
2. 시 조직, 예산, 법제, 통계, 대외협력 및 의회관련 업무
3. 새마을 및 국민운동, 청소년육성, 체육진흥, 민방위 재난관리업무
4. 지방문화예술 육성발굴,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업무
5. 각종 지방세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6. 회계출납, 물품구입및 공사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제6조(시민생활지원국) ①시민생활지원국에 시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둔다.
②시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생활환경 점검관리, 저소득주민 구호및 사회복지업무
2.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관련업소의 허가및 지도감독
3. 가정복지및 여성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업무
5. 각종 민원사무처리, 호적, 병무업무
6. 지가등 토지관리, 지적관리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과, 산림녹지과, 축산과를 둔다.
②농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지의 보존 이용에 관한사항
2. 식량작물 경제작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사항
3. 산림보호, 영림, 녹지관리업무
4. 축산및 내수면어업관련 업무

제8조(경제건설국) ①경제건설국에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경제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진흥, 기업육성, 연료수급관리, 노동조합관련업무
2. 국토이용계획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온천관련업무
3. 하천, 하수관리및 풍수해 종합대책
4.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
5. 교통행정 업무
6. 건축행정 업무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충주시보건소, 보건지소

제9조(설치) ①법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1] 과 같다.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2] 와 같다.

제10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둔다.

제11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제12조(설치) ①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87-1번지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학습단체,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지도
3. 식량, 원예, 특작, 약용등의 작물및 축산기술 지도
4. 농업인 기술연수와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신기술 개발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6. 지역특산물 개발보급
7. 기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6조(설치) ①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 과 같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가. 소내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나. 소내 서무, 인사, 공인관리
   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경리, 결산
   라. 사업관련 공사계약
   마. 상수도특별회계 물품출납 보관
   바.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원 사무
   사. 기채 및 일시차입
   아. 경영분석
   자. 상수도 중장기계획수립
   차. 상수도시설의 증설 또는 확장
   카. 시설공사자재, 기계, 기구의 검사
   타. 상수도 정수시설의 조사측량 및 시공감독
   파. 상수도 배수관 유지관리
   하.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및 단속
   거. 급수시설계획 및 관리
   너. 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감독
   더. 시설가압 및 옥내특수시설 허가
   러. 대행업소 지도감독
   머. 급수조례 위반자단속
   버. 상수도 요금조정 및 체납처분
   서. 소화전 시설관리 및 개수납처분
   어. 각종 상수도특별회계수입 과징 및 정리
   저. 배수관망도의 유지관리
   처. 노후관교체 및 세척공사시행
   커. 부정수도 및 도수단속업무
   터. 기동반 운영관리
   퍼. 누수탐사 및 수선
   허. 취수, 송수, 정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
   고. 원·정수 생산
   노. 상수도사업용 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도. 수압검사 및 급배수 조절

로. 수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모. 약품투입관리 및 시험
보. 수원지 일일 수질시험
소. 기타 수질시험에 관한 사항

2. 수질환경사업소
가. 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나.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운영
다. 차량 및 재산 물품관리
라. 재해시설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조사
마. 소내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바. 구내정비에 관한 사항(토지, 도로, 조경시설물 등)
사. 슬러지처리 및 사용방안에 관한 사항
아. 수안보하수처리장내 주민친화형시설 활용계획및 홍보에 관한사항
자. 차집관로 점검및 유지관리
차. 하수처리시설(기계, 전기분야) 신설 및 보수, 설계 시공감독
카. 하수처리장내 기계, 배관, 전기, 계장시설 관리운영
타. 전기안전관리업무(수·변전설비중심) 및 에너지절감 방안 강구
파. 배수펌프장(봉방, 용두, 칠금간이에 한함)시설의 유지관리
하. 충주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방법 연구 및 계획수립
거. 충주하수처리시설관련 수질검사 및 약품관리
너. 충주하수처리장 약품관리 및 탈수상태 연구개발및 실험
더. 충주처리장 미생물배양 및 소화조 시설관리
러. 기타 충주하수처리시설 기계, 전기(배수펌프장 포함) 정비에 관한 사항
머. 수안보하수처리시설내 처리구조물, 기계, 전기, 계장시설 관리운영
버. 차집관로 점검 및 유지관리
서. 수안보처리시설내 수질개선방법 연구 및 계획수립
어. 수안보처리시설내 미생물배양 및 수질검사, 약품관리
저. 탈수상태 연구개발 시험
처. 수안보하수처리장내 전기안전관리 업무
커. 주민 친화형시설 관리운영
터. 기타 구내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생환경사업소
가. 소행정의 종합조정 및 서무에 관한 사항
나. 문서수발및 공인관리
다. 예산, 경리 및 물품출납보관
라. 소내 복무단속
마. 청사관리
바. 위생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 변전시설의 유지관리
아.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자. 분뇨의 반입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차. 방류수질 및 분뇨가스등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카. 앙성처리장시설의 유지관리
4. 체육시설관리소
가. 소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나. 서무,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다. 소내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라. 예산, 회계, 재산관리
마.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의 시설관리및 운영(단 중원체육공원의 사용허가, 경비및 청소, 사용료 수납은 제외)
바. 경기장 및 시설물의 경비 및 청소
사. 경기장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아. 입장권의 검인 및 매표, 수표관리
자. 경기장시설의 조경관리
차. 경기장 운영의 보조 및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카. 전기, 통신, 기계, 냉난방, 조명시설의 유지관리
타. 경기용구 보관관리
파.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5. 문화회관관리사무소
가. 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나.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운영
다. 사용료. 입장료 등의 징수 및 물품관리
라. 입장권의 검표 및 수표
마. 문화회관의 시설관리 및 유지, 보수
바. 기타 소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가. 일반서무 및 예산
나. 회계경리 및 물품관리
다. 소장품 보관, 보존처리및 전시
라. 박물관시설 및 중앙공원 유지관리
마. 중원문화유적의 연구조사 및 보존관리
바. 유물유적의 발굴수집 관리
사. 민속 및 향토사 조사연구
아. 학술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
자. 유물전시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차.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카. 그 밖에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7. 여성회관
가. 여성회관운영의 종합계획수립및 조정
나. 예식장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술, 취미교육 운영

라. 아동및 여성에 대한 상담사업
마. 기아, 미아 조치
바.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알선
사. 일반서무, 예산회계,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아. 시설물사용허가및 사용료 입장료등의 징수

8.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가. 도매시장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다. 도매시장의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라.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관리
마.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
바. 기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

9. 수안보개발사업소
가. 온천수, 상수도 운영관리 및 온천수 개발자료 조사
나. 온천수, 상수도의 급수 및 사용료 부과징수
다. 관계시설의 기자재 및 재산의 유지관리
라. 온천지대의 환경정화
마. 기타 온천 휴양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바. 중원회관 관리
사. 상수도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10. 시립중앙도서관
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5장 읍·면·동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1조(관할구역)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충주시보건소조례
2.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3.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4.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
5. 충주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6.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
7.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
8.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
9.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10.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11.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12.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13. 충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
1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계장이"를 "기획업무담당 주사가"로 하며, "소관담당 실무계장이"를 "소관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②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충주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충주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예술계장이"를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⑥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⑦충주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인증계기날인민원사무표 1번란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무보고서중 좌측상단의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⑧충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서무 또는 인사계장으로"를 "서무 또는 인사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⑨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충주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시정계장이"를 "대외협력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⑫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부읍장, 부면장이"을 "총무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⑬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중 "내무부훈령"을 "행정자치부훈령"으로 한다.

⑭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전생활계장으로"를 "체육청소년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⑮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장으로"를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⑯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회과장"을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은"을 "사회업무담당 주사는"으로 한다.

⑰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사회과장"을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를 "사회업무담당 주사를"으로 한다.

⑱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으로"를 "사회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⑲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계장이"를 "사회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⑳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중 "사회계장이"를 "사회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회경제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사회과장"을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㉑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제2호중 "환경보호과"를 "환경미화과"로 한다.

㉒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㉓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를 "공업업무담당 주사를"로 한다.

㉔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㉕충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계장이"를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㉖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㉗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㉘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수자원관리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방재계장"을 "하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㉙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하며, "수자원관리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㉚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지도과장"을 "기술연수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농촌지도자회는 다음의 "인력육성계장"을 "연수기획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생활개선계장"을 "생활개선업무담당지도사"로 하며, 4-H후원회는 다음의 "인력육성계장"은 "기술연수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㉛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㉜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주관부서계장으로"를 "주관부서 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㉝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기구에관한 경과조치)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은 1999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별표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9조제2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주시 보건소	충주시 금능동 700	충주시 일원
충주시보건소 주덕읍지소	〃 주덕읍 신양리	주덕읍 일원
〃 살미면지소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살미면 일원
〃 상모면지소	〃 상모면 온천리	상모면 일원
〃 이류면지소	〃 이류면 대소리	이류면 일원
〃 신니면지소	〃 신니면 용원리	신니면 일원
〃 노은면지소	〃 노은면 연하리	노은면 일원
〃 앙성면지소	〃 앙성면 용포리	앙성면 일원
〃 가금면지소	〃 가금면 탑평리	가금면 일원
〃 금가면지소	〃 금가면 하담리	금가면 일원
〃 동량면지소	〃 동량면 조동리	동량면 일원
〃 산척면지소	〃 산척면 송강리	산척면 일원
〃 엄정면지소	〃 엄정면 미내리	엄정면 일원
〃 소태면지소	〃 소태면 오량리	소태면 일원

[별표2]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9조제4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장록지구보건진료소	주덕읍 장록리 362-6	원장록, 풍덕, 봉천, 지내, 창동, 원당우, 조동, 유동, 성동, 석우
공이지구보건진료소	살미면 공이리 449-14	공이1, 2리
문산지구보건진료소	살미면 문강리 451-12	문산, 강진, 토계
대사지구보건진료소	상모면 사문리 321-10	대사, 복계, 석문, 미록 선권,
매현지구보건진료소	이류면 매현리 476-4	매산, 수현, 탄동, 소용 월은, 수주, 팔봉
동락지구보건진료소	신니면 문락리 196-5	도악, 숭선, 희문, 남악 도원, 수월, 동화, 화치 송암, 광벌
안락지구보건진료소	노은면 안락리 87-2	대덕1.2리, 법동, 가신1 .2리, 안락1.2리
수룡지구보건진료소	노은면 수룡리 577-3	수룡1.2.3리, 신효2리
앙암지구보건진료소	앙성면 모점리 33-3	의암, 만락, 검단, 동막 모점, 하율, 중방곡 저전, 서음, 강정, 학미
가흥지구보건진료소	가금면 가흥리 274-24	상가흥, 하가흥, 내동 능암, 원동, 신대, 형천 장미산
오석지구보건진료소	금가면 오석리 635-1	신대, 문곡, 반송, 화동 석교, 모산, 종포
대전지구보건진료소	동량면 대전리 269-5	배일, 수회, 마흘, 황전 내동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개천안지구보건진료소	동량면 손동리 654-12	탄동, 미라, 양아, 금잠 음양지, 하곡
명서지구보건진료소	산척면 명서리 611-3	서대, 도덕, 명돌, 정암 방대, 명암
추평지구보건진료소	엄정면 추평리 497-8	추동, 하일, 유봉, 옥성 춘문, 탑평, 가양, 주동 직동, 행정
복탄지구보건진료소	소태면 복탄리 685-6	복탄1.2리, 조기암 세포, 덕은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 충주시상수도사업소	· 충주시 금릉동 700 번지
·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 충주시 봉방동 553 번지
·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	· 충주시 봉방동 649 - 3 번지
·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	· 충주시 연수동 441 - 1 번지
· 충주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	· 충주시 성내동 190 - 1 번지
· 충주시박물관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 - 5 번지
· 충주시여성회관	· 충주시 문화동 2789 번지
·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충주시 목행동 426 - 4 번지
·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	·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 - 1 번지
·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 충주시 교현2동 365 - 3 번지

'별지'

[별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연번	위임사무명	권한위임		근거법령
		읍면장	동장	
1	· 과세증명원 발급 (시에서도 병행처리)	○	○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 제14조
2	· 지방세완납(미과세) 증명서 발급(시에서도 병행처리)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3	·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	· 충주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5호
4	·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	○	○	· 충주시세조례제6조
5	· 지방세 체납 독촉장 교부	○	○	· 충주시세조례제6조
6	· 영달예산범위안의 지출원 행위와 지불명령	○	○	· 지방재정법제49조
7	· 영달예산범위안의 건물건 설공사 집행	○	○	· 충주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8	· 불용품 매각처리	○	○	·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9	· 부재자사실확인	-	○	· 주민등록법 부칙 제5항
10	· 의료보호증 재사용(단,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	○	· 의료보호법제7조 동시행 규칙 제6조제2항
11	·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	○	· 의료보호법제7조 동시행 규칙제5조제3항

연번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근 거 법 령
		읍면장	동장	
12	· 의료보호증 재발급	○	○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13	· 공중변소관리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제16조
14	· 분뇨정화조 청소지도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제14조
15	·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30인용 이하에 한함)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제10조및 제11조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6조 건축법제9조 및 제18조
16	· 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	-	·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5항
17	· 청소업무의 관리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
18	· 매화장 증명	○	○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19	· 개장 신고	○	○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20	· 공설묘지 사용허가 (주덕읍장에 한함)	○	-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 운영조례제3조제1항
21	· 매화장 신고	○	○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동법시행 규칙제1조

연번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근 거 법 령
		읍면장	동장	
22	· 묘지이외의 토지(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관한 개장신고	○	○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동법시행 규칙제6조제2항
23	·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	○	·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 조례 제16조
24	· 농지전용신고	○	-	· 농지법제37조제1항제1호
25	· 불법농지전용예방 및 단속 전용지사후관리	○	○	· 농지법시행령제59조 제1항
26	· 농지원부작성 비치	-	○	· 농지법제51조제1항
27	·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	○	· 농지법제52조제1항
28	· 자경증명 발급	-	○	· 농지법제52조제2항
29	· 산림외 임산물의 벌목승인 및 극인타기 (포플라에 한함)	○	-	· 산림법제92조제2항
	[시장이관리하는 도로에 한함 (연번30~35호까지)]			
30	· 도로점용료의부과징수	○	○	· 도로법제43조
31	· 건축신고시 도로점용허가	○	○	· 도로법제40조제1항
32	·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양도 양수허가	○	○	· 도로법시행령제2조제1항
33	·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연장 허가	○	○	· 도로법제40조제1항

연번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근 거 법 령
		읍면장	동장	
34	·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상속 신고처리	○	○	· 도로법시행령제3조제1항
35	·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 공작물의 단속(일부)	○	○	· 도로법제50조제4항
36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시에서도 병행처리)	○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의2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제1항
37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	○	· 건축법시행령제117조 제4항
38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	· 건축법시행령제117조 제4항
39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의 수리	○	○	· 건축법시행령제117조 제4항
40	·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시에서도 병행처리)	○	○	· 건축법 제69조, 동법시행령제115조
41	·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단, 상모면 제외)	○	-	·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7조
42	· 상수도업무 (단, 상모면 제외)	○	-	·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51조
43	· 급수조례위반자 단속	○	-	·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 등에관한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91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4명

총 계 : 1,205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정원 6명은 199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제1호중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원인 지방행정5급1명은 해당직렬 결원이 최초 발생하는 날에 해당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의 개정)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행정동의명칭.관할구역및동장의정수중 "충인동·충의동"란과 "용관동·용두동·달천동"란"종민동·안림동·목벌동"란을 각각 삭제하고, "성내동·성남동·성서동"란과 "단월동·풍동·가주동"란 "교현1동"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2조(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의 개정)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통의반명칭및관할구역중 "성내.성남.성서동"란에 "성내.성남.성서동"을"성내.충인동"으로 하며 통명,반명,구역(번지)란에는 성서5통 다음에 "충인.충의동"란의 통명,반명,구역(번지)을 삽입하고,

"교현1동"란에 "교현1동"을 "교현.안림동"으로 하며 통명,반명,구역(번지)란에는 교현1동제44통 다음에 "종민.안림.목벌동"란의것을 삽입하고,

"단월.풍.가주동"란에"단월.풍.가주동"을 "달천동"으로하며 통명,반명,구역(번지)란에는 가주제2통 다음에 "용관.용두.달천동" 란의것 삽입하고,

"충인.충의동", "용관.용두.달천동", 종민.안림.목벌동"란의 동명을 삭제 한다.

제3조(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개정)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등"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동	성내.충인동	충주시 충의동 22
	교현.안림동	충주시 교현동 352-1
	교현2동	충주시 교현동 1094
	용산동	충주시 용산동 613
	지현동	충주시 지현동 511
	문화동	충주시 문화동 433
	호암.직동	충주시 호암동 133-2
	달천동	충주시 단월동 408-5
	봉방동	충주시 봉방동 203-1
	칠금.금능동	충주시 칠금동 874
	연수동	충주시 연수동 529-6
	목행.용탄동	충주시 목행동 6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법정 동명	동장 정수	행정 동명	관 할 구 역
성내동 성남동 성서동 충인동 충의동	1	성내· 충인동	성내동, 성남동, 성서동, 충인동, 충의동 일원
교현동 종민동 안림동 목벌동	1	교현. 안림동	교현1동, 종민동, 안림동, 목벌동 일원
단월동 풍 동 가주동 용관동 용두동 달천동	1	달천동	단월동, 풍동, 가주동, 용관동, 용두동, 달천동 일원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한 충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각종 정보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이내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1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 9 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 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전에 취소요구시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설치및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1조중 "지위향상을 위하여 충주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8조로, 제12조를 제16조로,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9조와 제10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특별사용료 징수) 예식장 사용시 사진, 비디오 촬영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의거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기준액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유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 ①사용자가 유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유료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입회 및 감독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식실 시설사용일 15일전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예식실 시설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4. 회의실 등은 시설사용일 7일전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반환한다.
5. 회의실 등은 시설사용일전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6. 교양교육 수강신청자가 수강료를 선납하고 교육개시전에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하며, 교육개시후에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강하지 않은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신고일이 속한 월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주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액

사용시설기준	기 준	기 본 료	비 고
1. 시설사용료 ㅇ 대회의실 ㅇ 소회의실 ㅇ 식 당 ㅇ 교양강습실	 4 시간 4 시간 1 일 4 시간	 50,000원 25,000원 40,000원 25,000원	- 기본시간을 초과할때에는 매시간 마다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 슬라이드 및 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 특수기물을 상영할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2. 예 식 실 ㅇ 식장사용료 ㅇ 폐백실 ㅇ 기타재료대	 1 시간 1 시간 5 종	 90,000원 25,000원 20,000원	- 평일 사용시 예식,폐백실 사용료 50%할인
3. 교양교육 ㅇ 기술.취미 교 실 ㅇ 기타교육	 1인 1월	 10,000원	
4. 부대시설 ㅇ 피아노사용료 ㅇ 연료대 (냉.난방) ㅇ 특별사용료 (시설사용수수료)	 1 회 1회/1시간 1건/1회	 10,000원 대회의실20,000원 기 타 10,000원 사 진 30,000원 비디오10,000원	- 매시간 초과시 기본료의 50%가산 - 예식장운영시 자율화로 인한 시설 사용업주 부담

[별지1호서식]

여성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접수번호

1. 사용기간 :
2. 시설구분 :
3. 사용목적 :
4. 참석예정인원 :
5. 사용자(개인,단체)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6. 사용료 납부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납부일자	영 수 자 (인)

199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 주 시 장 귀 하

접수번호 :

여 성 회 관 사 용 허 가 서

1. 사용인 주소 및 성명
2. 시설구분
3. 사용목적
4. 사 용 료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납 부 일 자	영 수 자 (인)

5. 허가조건 : 충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각종집회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신청인 귀 하

[별지2호서식]

관 람 수 입 정 산 내 역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 관람권 수입내역

구분 / 관람권	검인		판매		잔액	정산내역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문예진흥기금	금액		
							계	사용료	연료비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 명 (인)

사용자 주소 성 명 (인)

확인자 직위 성 명 (인)